

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4. 11. 24-----사하구청장

나. 회 부 일 자 : 2004. 11. 24

다. 상 정 일 자 : 제123회 사하구의회(정례회)

제4차 총무위원회(2004.12.17)상정, 채택

2. 제안설명요지(조동규 재무과장)

가. 제안이유

-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84조 및 사하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중요 공유재산의 취득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여 우리구 의회의 의결을 받아 목적사업을 차질 없이 집행하고자 함

나. 주요골자

- 민선4대 주요 시정 과제의 하나인 「Well-being시정」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고지대 저소득층이 지역의 주거환경개선을 통해 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생활의 질을 높이고
- 시비 보조사업으로 노후 불량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공원 등 간선시설이 없는 감천2동 고지대지역에 쌈지공원 2개소를 조성하므로서 주변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코자 함

- 본 계획은 2004. 9. 13일 부산시로 부터 고지대 주거환경 개선사업 대상지로 선정결과를 통보 받았음에도 지난 122차 임시회의시 의결된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시 본 안건을 누락하고 123차 정례회시 변경승인의 건은 제출한 것은 예산편성 전 승인받아야 하는 절차상 하자로 차후로는 이러한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.

5. 질의답변요지 : 생략

6. 토 론 요 지 : 없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